

「WTO기본통신협상대책 공청회」 “98년부터 기본통신대외개방시작”

우리협회는 10월 23일 WTO기본통신협상대책 공청회를 가졌다. 오는 12월 양허목록제출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. 통신개발연구원의 최병일 박사의 주제발표문중 주요 부분을 게재한다. < 편집자 주 >

통신시장 대외개방에 대한 기본시각

- 통신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
-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전향적 자세

통신시장개방을 ‘모면해야 하는 위기’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‘절호의 기회’로 적극 활용

시장진입의 자유화

- EC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추진하고
 - 민간의 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가능한 방향으로 시장진입제도 개편
1. 정책적인 차원의 사업자 수 제한 폐지
 - 주파수 제약이외, 규제기관의 수요 /공급판단에 따른 시장진입제한 금지
 -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처리절차를 마련, 사업 희망자가 사전공고 없이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
 - 무선주파수 공개 및 할당과 번호배분에 관한 원칙 설정
 2. 외국인 지분참여제한 및 경영제한 폐지
 - '98년부터 유선계 전화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에 50%까지 외자허용, 동일인 지분제한, 외국인 대주주 금지 및 임원의 1/3이상 금지조항 완화
 - 2000년부터 기본통신시장 전면개방 추진
 - 한국통신에 대한 외자참여는 별도 검토
 3. 사업자 구분제도 개선
 - 현재 망 소유에 따른 사업자 구분, 사업자별로 제공가능한 서비스 종류 열거방식의 이중적 규제제도는 신규서비스 도입의 지연, 경제영역적 서비스제공에 대한 판단 지연 등으로 경쟁촉진 지역 가능성이 높음.
 - 통신망의 보유 및 운용만을 기준으로 사업자를

기본통신시장 대외개방정책 기본방향

1. 선국내경쟁 후대외개방

대외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'97년 말까지 기본통신 전분야에 걸친 다수사업자 경쟁체제 구축

2. 단계적 자유화

- 1단계 : '98년부터 기본통신분야 외국인 소유 및 경영제한 상당한 정도로 완화
- 2단계 : 2000년 이후 전면 대외개방
 -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과감한 시장개방추진 통해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정보통신이용의 양과 질의 획기적인 확충을 도모
 - 전향적인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구축으로 해외시장 개방촉진과 진출을 활성화
 - 다자간규범에 맞는 경쟁촉진적인 규제제도 운용

- 규제 : 망을 가지지 않은 사업자의 서비스제공은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제도 개편 추진
4. 전용회선의 공·전·공접속 및 회선재 판매 사업의 조속한 허용
 -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음성회선재판매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로 외국인 단독 진출 가능 : 다만 공전공접속은 전용회선이용약관에서 규제
 - 망보유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효과적인 경쟁구도구축을 위해 공중망 및 전용회선 요금조정, 접속부가료제 도입 검토 조기완료
 5. 무선 주파수 공개 및 효율적 할당
 - 신규통신사업 신청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투명한 주파수 공개
 - 무선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주파수 공개제도 검토
 -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기술개척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
 6. CA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허용
 - 초고속망 구축촉진, 망의 통합화와 효율성 제고 위한 종합적인 통신, 방송시장 장기구도 수립차원에서 추진
 - 통신, 방송사업자간 교차투자허용
 7. 이용자의 위성지구국 직접 설치 허용
 -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국내 /외 위성지구국 설치를 이용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허용

경쟁촉진적 규제제도의 정착

- 효과적인 공정경쟁보장을 위하여 전면적인 경쟁이 도입되기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: 늦어도 '96년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함
 - 규제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과 연계하여 제도 정비 추진
1. 상호접속제도 보완
 - 동등접속보장
 -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산정
 -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접속점의 범위확대
 - 일괄구매강요금지(Unbundling), 가입자번호유지(Number Portability), 동등식별번호부여

- (Dialing Parity)등 추진
2. 경쟁촉진적인 요금규제제도 도입
 - 요금규제의 대상과 방식의 개선 : 요금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하고, 단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시장지배력이 없어질 때까지만 인가한다는 예외 규정만 제시, 각 서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요금인가방식고시, 경쟁이 도입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의 도입 추진 (예 : 국제전화, 무선호출,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)
 - 요금규제절차 및 요금규제기관 장비 : 요금규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금인가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일원화
 3. 통신망 및 정보 공개제도 정비
 -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및 서비스 제공이 비차별적이고 동등한 조건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
 4. 회계제도 정착
 - 정확한 원가산정 및 경쟁대상 역무별로 명확한 회계분리 실현
 - 회계보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고내용의 검증기능 보완
 5. 경쟁체제 부합되는 보편적 서비스기금제도 도입
 - 보편적 서비스가 전면 경쟁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, 경쟁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의 '보편서비스 기금제도' 도입 검토 및 집행
 -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시대에 대비한 '보편적 서비스' 개념

규제기관의 전문성 제고

- 기존 정보통신부의 규제기능은 가능한 통신위원회로 하고 일상적인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 부여, 정보통신부의 다른 부서는 정책기능 위주로 개편
- 실무 및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무국을 설치하며, 기존정보통신부내 규제기능 담당 인력과 조직을 재조정